

문서번호	도시디자인과-101682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0150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미녀	김우익	박영서	代박영서	김경호	11/05 代김경호
협 조					

-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

민·관 협력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도 시 관 리 국
(도 시 디 자 인 과)

-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

민·관 협력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추진배경

◇ 각종 언론매체 불법 현수막 문제지적 및 시의회 정례회시 문제점 제기등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구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민·관이 합동으로 수거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근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서울시 수거보상제 방침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2025(2015.10.21)

II 추진 필요성

1 불법 현수막 현황

- 서울시, 자치구의 책무(정비·단속 권한 : 구청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① **시장등**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① **시장등**은 불법광고물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장등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현수막 정비건수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9월
건수	131,049	10,520	22,315	59,257	38,957

-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에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이 지속적 발생
- 상습 불법광고 행위자들은 과태료에 개의치 않고 조직적으로 불법게시
- 행정현수막으로 인한 정비·단속의 형평성 문제 야기
 - 행정기관, 정당, 노동단체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정현수막으로 인한 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 단속효과 반감
-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대비 현장 정비·단속 인력 부족

② **수거보상제 타구 사례**

- 참여대상 : 일반시민(주민)
- 운영절차



- 장점 :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로 시민의식 제고
- 단점 : **전문성 및 안전사고 등 문제발생 가능성이 큼**

〈 사례 비교 〉

	서울시 중구 (기 시행)	청주시 (기 시행)
구분	시민대상 수거보상	시민대상 수거보상
참여대상	중구 거주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청주시민
보상액 (장당)	3㎡이상 : 1,000원 3㎡이하 : 500원	현수막 : 1,000원 족자형 : 500원
보상한도 (개인별)	주 50,000원 이하 월 200,000원 이하	주 20,000원 이하 월 100,000원 이하
특이사항	전국 최초시행 (05.10)	

III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11. ~ 12.

■ 수거대상 : 도로변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전주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 정당, 노동운동, 시설물보호,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 참여자 모집 :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 회원 중 20인 이내(지부 추천)

- ※ 금년에는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범 운영」으로 수거 시행시 **전문성, 안전사고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등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수막 수거 전문가인 옥외광고협회를 활용·추진하고 **내년에는 관내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정비방법 : 합동 단속반 구성·운영 [6개조(3인 1조)]

- 정비·단속이 어려운 새벽시간·야간·주말·공휴일 등 집중 단속
-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사업추진

〈합동 단속반 구성 및 집행 책임자 현황〉

참가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권역	중곡동	구의동	능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기타 (주요간선도로)
정비·입회	박민규	도영호	김미녀	원종필	노우평	허대행
참가자 (협회·직원)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 보상금 지급 단가

- ┌ 현수막(가로 3m² 이상) : 장당 2,000원
- └ 족자형(세로형) 현수막 : 장당 1,000원

■ 보상기준

- 1인/일 10만원 이내, 1인/월 200만원 이내

■ 수거 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의거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현수막 정비 전,후 사진 제출(jpeg 원본, 사진내 날짜정보 삽입)

■ 소요예산 : 22,030천원(시 특별교부금)

- 수거보상 : 21,000천원
- 기타1,030천원(홍보 및 교육비 400천원, 보험료 630천원)
 - 정비차량에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반” 스티커 부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참여자 전원 보험가입
 -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증 구청장 명의 발급(상시 휴대)

※ 사업참여 자치구 : 14개구

-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구,중랑,노원,은평,양천,금천,동작,관악,서초,송파

IV 행정 사항

■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수거보상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협약서 날인

■ 참여자 모집 및 안전교육 : 2015.11.10(화)

- 참여자 일괄 보험 가입(區)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제출 : 매주 금요일(단속원 ⇒ 區)

■ 매주 월요일 불법현수막 수거실적 제출 : 市(2015.11월 ~)

- 붙임 : 1.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2. 정비 전,후 사진 제출서식 1부. 끝.